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 지부교섭 속보

10호

2020.08.14(금)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10차 지부교섭\_추가 제시안 없음]

## 불신의 골 깊어진다!



### 제시안 없는 10차 교섭!

여름휴가 후 첫 교섭이 열렸다. 13일(목) 15시 한은 교육문화관에서 노사 교섭위원들이 3주만에 만났다. 하지만 사측 교섭위원들은 빈손으로 교섭에 참여했다. 문구 정리가 쉽지 않아 차기 교섭에 제시안을 제출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정태 지부장은 “예전보다 지부 요구안이 많이 줄었는데도 사용자들이 수용을 못하고 교섭이 점점 길어진다. 불신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조합원들이 수용할만한 제시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공직취임, 간부 시간할애

####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사측 제시안없이 공직취임과 간부 시간할애에 대해 노사 양측 공방이 이어졌다. 사측은 타임오프 평계로 공직취임 인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처우 문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으니 지부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간부 시간할애도 지회, 지부간부가 담당 회의에 참여할 시간을 보장하라는 수준이라 사측에 별 부담이 없다. 이미 지회별로 확보된 시간도 있지만, 최근에 지부에 직접 개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무직 조합원들이 많아져서 필수적인 요구안이다.

### 우리 방식대로 간다!

지부는 8월 11일 총파업 공고문을 통해 다음주까지 의견접근할만한 제시안이 없을 경우, 9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지금처럼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불신의 골을 깊어지게 만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다. 차기교섭에서 사측이 얼마나 진정성있는 제시안을 제출하느냐에 달려있다.

\* 차기 교섭 : 8/20(목) 15시 한은 교육문화관

10차 교섭 속기록

# 공직취임, 간부 시간할애 수용하라

**사 :** 오늘도 논의했지만 문구 정리하기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차기에는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 :** 점점 교섭이 길어진다. 노조가 예전보다 요구를 더 적게 하고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수용 못하다보니 문구 하나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7/22 지부 총파업했고, 9/2 2차 파업 예상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9/9 계획하고 있다. 더 불신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사용자가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하면 좋겠다.

**사 :** 공직취임에 대해 1명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공직취임 간부의 범위도 해석이 다르다. 선출직이 직선, 간선이 있을텐데 구분되나?

**노 :** 1명이 아니라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간부범위는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지부장이 지부 노안부장, 교육부장으로 임명하면 공직취임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요구안은 직선이든 간선이든 모두 포함한다.

**사 :** 공직취임은 지회별로 있는데 왜 지부 요구안으로 했는지? 타임오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부든 지회든 상관없이 인정한다. 그 외 별도로 요구하는건가?

**노 :** 공직취임 인정하는 것이 사업장마다 다르다. 그러다보니 매년 보장돼있는 사업장에서 임원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조파괴 등으로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줄기도 했지만, 조합원이 다시 많이 늘었다. 기존 간부 수로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3차례 임원 후보 등록을 못하는 지경까지 갔다. 그런 상황이라 올해 반드시 해야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우리 지부는 대규모 사업장이 많지 않다. 지회별로 전임자 1~2명이다. 그래서 그 외에 추가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처우는 지회별로 별도 협의하자고 했

으니 그대로 수용하면 되지 않나? 다만 급여 외에 학자금 등 복지 부분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인정했으면 좋겠다.

**사 :** 그 내용 참고해서 다음주에 안 제출하겠다. 지부 조합원이 계속 늘어나니 지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 인원이 필요한 걸 지부교섭에 소속된 회사에서만 하려는 건지? 다른 지부는 공직취임 요구안 없죠?

**노 :** 지부교섭 참여 안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요구하고 있다. 지부 간부들이 매번 교섭에 참여하고 수용 안하면 타결 못한다고 했다. 내년엔 지부교섭 사업장이 더 늘 것이다. 공직취임은 대부분 지역의 큰 사업장에서 단협으로 인정받아서 지부 간부로 나온다. 우리 지부는 큰 사업장이 2개 정도다. 한온과 보쉬. 규모있는 사업장은 수용해야 한다. 경주지부는 오래 전부터 임명직까지 모든 회사가 1명씩 다 지부로 간부를 파견한다. 지부교섭에서 타결한 내용들이다. 복지는 학자금까지 지급하고 임금은 별도 조합원 수당으로 회사가 지급해서 해결한다. 법으로 안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사 :** 간부 시간할애는 특정사업장을 말하나? 기존에 합의된 내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노 :** 대부분 회사가 단협에 조합원 범위가 정해져있다. 정년퇴직이 짧아지고, 희망퇴직이 많아지니 사무실 직원이 노조에 찾아온다. 한온 말고도 들어오고 있다. 사업장 노사가 맺은 협약이 있으니 지회 단협의 조합원 범위를 인정하고, 그런 분들은 지부 소속으로 가입을 받는다. 그 분들도 노조 간부를 하는데 최소한 대의원회의나 담당 회의는 참가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사용자들도 사무실 직원들이 노조 찾아오는 상황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